

따라서 하자보증금(1천만원)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률의 위입이 있어야 하나 건설교통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891 |
|----------|-----|

2001년 6월 일
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 다. 상정일자 :
 - 제20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2001년 6월 25일)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 가. 제안이유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3조).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100분의 15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 건물(20세대이상)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2
 - 전용면적 60초과~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3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4
- 부담금은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아 허용할 수 있음(안 제6조).
- 납부 회수는 2회로 함.
-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함.
- 납부 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함.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안 제7조).
-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2조).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세입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귀속분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수입금,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 세출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 광역교통계획·추진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 | |
|--|--|
| <p>○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p> <p>□ 개 요</p> <p>○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6.9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91호로 2001.6.11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및 체계적 관</p> | <p>리를 도모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p> <p>□ 주요 조문별 의견</p> <p>첫째,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에 대한 의견</p> <p>○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동법 제11조의3 제3항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p> <p>< 부담금 부과율 비교 ></p> |
|--|--|

| 사 업 명 | 시 행 령 | 조 례 안 |
|--|----------|-------------------------------|
|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 | 100분의 30 | 100분의 15 |
| ○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85㎡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100분의 4 |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

| | |
|--|---|
| <p>○ 그리고 부과징수된 부담금중 60%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용하고 나머지 40%는 정부에서 운용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납부하게 되며</p> <p>○ 이와 같은 부담금을 징구하면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70~200만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어 아파트분양가 상승과 서민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됨.</p> <p>○ 또한 표준개발비 산정시 서울시의 택지개발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과다하게 고시된(226천원/㎡) 점을 고려하여 택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부과율을 최대한 낮게(100분의 15) 적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p> <p>○ 그리고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과율을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차등적용(100분의 2, 100분의 3)한 것은 바람직하나</p> <p>○ 전용면적 45㎡(13평)이하 주택의 경우 저소득 무주택시민의 주택마련 지원과 전세</p> | <p>금안정 등을 위하여 부담금의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45㎡~85㎡이하 주택도 부과율을 더 낮출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됨.</p> <p>○ 또한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내의 상가 등 부속건물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부과율의 조정 규정을 주거용시설과 따로 구별하여 규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p> <p>둘째, 제12조(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의견</p> <p>○ 교통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부담금의 운영·관리를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p> <p>○ 현재 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이를 통합하고 광역교통시설 계정을 설치하는 것이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옳다고 판단됨.</p> <p>○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면 법령의 개정사항</p> |
|--|---|

이므로 국회나 정부에게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건의하여 개선코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셋째, 부칙 제1항(시행일)에 대한 의견

○ 동 조례 부칙 제1항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소급 입법으로 규정하였음.

○ 이는 법률불소급의 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믿고 따르던 선의의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조례의 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선의의 납부의무자를 보호코자 하는 동 부칙은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이와 같은 소급 입법은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소급시행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가. 수정이유

○ 안 제3조(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부담금의 부과율을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부과율을 조례로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게 차등 적용하며

○ 단지내 상가 등 주택이외의 시설에 대한 부과율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부담금의 부과율을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100분의 2(안 제3조제2항가호)

○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안 제3조제2항나호)

○ 주택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4(안 제3조제2항다호)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사업장"을 "자동차 전시용 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매매업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매매업자의 하자보증금 예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